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청년 매입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30%(단, 3·4순위 경우 시중시세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고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신청시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희망자 분들께서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소득, 자산,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 (기준일)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9. 02. 2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등)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공급방법) 신청시 희망 주택(건물)을 선택하며,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모집호수) 본 모집공고는 현재 보유주택 및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을 감안하여 모집단위별로 현재 입주 가능한 주택(실 기준)의 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1세대 1주택)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입주 대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하며, 이후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 (관리비 등) 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 청소용역비, 전기안전관리비 및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모집일정 안내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자격조회 및 소명	⇒	당첨자 및 예비자 순번발표	⇒	계약체결
2/21		3/13~15		3/25~5/10		5/24		개별안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자산 조회기간은 6주가량 소요되며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당첨자 발표 등 모집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 당첨자 및 예비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추후 일정은 개별 연락 예정
- 순위별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당첨자에 한하여 주택열람 및 호실 추첨이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개별 안내 예정

2 선정인원 및 공급대상 주택

□ 선정인원 : 30명 - 1인 1호 공급(예비입주자 3배수 선정(총90명) 예정)

- 입주자모집은 주택별로 모집신청을 받으며 입주당첨도 주택별로 선정을 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추첨에서 탈락하신 분 중 순위별 입주자격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신청주택별이 아닌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90명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후 계약 및 입주포기, 퇴거에 따른 공가 발생시 주택 구분없이 우선순위자에게 입주 기회를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모집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당시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공급대상 주택 : 총 30호

연번	주택명	주소(도로명)	주택유형	공급호수
1	더휴빌	제주시 산천단동3길8-10	다세대	16
2	네오캠퍼스	제주시 연삼로411	도시형생활주택	8
3	아라디오반 풀하우스	제주시 아란9길33	연립주택	6

-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청소용역비, 승가기 유지비 등 별도의 관리비가 발생하오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3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2.21.) 현재 무주택자이며 제주시 이외 출신(4순위는 무관)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혼인 중이 아닐 것)
- (청년 인정기준) ① 대학생(‘19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 ②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지역 출신 인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해당 가구가 제주시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에 주민등록상 등재하고 거주하는 경우

- ※ 해당 가구는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를 의미함
- ※ 단, 동일한 시에서 주민등록 등재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통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은 지원 가능(※추자도, 우도, 비양도 등)
- ※ 부모 모두 사망(주민등록 말소 포함)한 경우 타 시군 출신 불문(가족관계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초본 등 제출)
- ※ 입주대상 주택의 소재지역(시)에 신청자의 부모의 주민등록 등재시 지원 불가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대학교]

1. 「고등교육법」제2조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 다만,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 제외

[고등·고등기술학교]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5.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 다만,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4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제주시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제주시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으로서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세부 자격요건</th> </tr> </thead> <tbody> <tr> <td>생계·의료수급자</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td> </tr> <tr> <td>보호대상 한부모가족</td> <td>「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td> </tr> <tr> <td>주거지원 시급가구</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 미구비 주택)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td> </tr> <tr> <td>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td> <td>「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96백만원이하, 자동차 2,499만원이하, 세대 기준)</td> </tr> <tr> <td>아동복지시설 퇴소자</td> <td>「아동복지법」 제 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96백만원이하, 자동차 2,499만원이하, 세대 기준)</td> </tr> <tr> <td>고령자 가구</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65세 이상)가 있는 가구</td> </tr> </tbody> </table>	유형	세부 자격요건	생계·의료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 미구비 주택)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96백만원이하, 자동차 2,499만원이하, 세대 기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96백만원이하, 자동차 2,499만원이하, 세대 기준)	고령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65세 이상)가 있는 가구
	유형	세부 자격요건													
	생계·의료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 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 미구비 주택)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96백만원이하, 자동차 2,499만원이하, 세대 기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96백만원이하, 자동차 2,499만원이하, 세대 기준)														
고령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65세 이상)가 있는 가구														
2순위	제주시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제주시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장애인가구의 경우 100%) *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세대기준, 총자산 196백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이하)														
3순위	제주시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제주시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장애인가구의 경우 150%) * 다만, 행복주택(대학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본인기준, 총자산 75백만원이하,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을 것)														
4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세대 기준이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 기준, 총자산 232백만원이하, 자동차 2,499만원이하)														

□ 동일순위내 입주자 선정기준

- 경쟁시 전산추첨(자체추첨)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 소득·자산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 소득기준 금액						(금액단위 : 원)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2,501,295	2,923,452	2,923,452	3,110,003	3,312,90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3,501,813	4,092,832	4,092,832	4,354,004	4,638,06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4,002,072	4,677,522	4,677,522	4,976,004	5,300,64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5,002,590	5,846,903	5,846,903	6,220,005	6,625,8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7,503,885	8,770,355	8,770,355	9,330,008	9,938,715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자산	총 자산 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각 순위별 총자산 보유금액 이하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 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각 순위별 자동차 보유금액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3순위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함						
검증 대상	※ 청년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함(동거인 신청 가능). ※ 해당 가구: 신청자,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및 신청자의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총자산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입주순위 및 자격별로 **검증범위가 다름에 유의**)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차 계약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 거주가능하며,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2회의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 세부내역 첨부 자료 참조

- 1,2순위 : 주변시세의 30% 수준
- 3,4순위 : 주변시세의 50% 수준
- ※ 임대계약 전에 주택도시기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신청방법

□ 현장 접수

- 신청서(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작성
- 현장접수 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시사무연구동에서 접수를 받으며 근무시간(10:00~17:00)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방문 접수시 신청자의 혼잡으로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

- 신청서(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작성
- 우편접수 시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 소인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능하며 이후 발송분은 전부 무효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 서류는 일반우편으로 접수받지 않으며, 일반우편 발송으로 서류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득, 자산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자 **순번 발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 소득, 자산 소명대상자인 경우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소명처리**된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 주소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330(영평동, 세미양빌딩) C동 102호 주거복지팀 담당자 앞 (우편번호63309)
- 문의사항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064-780-3595, 3592)

□ 입주자격 검증

-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7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입주자모집공고일('19. 2. 2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서류접수는 원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 개별 제출 서류(재학 및 졸업 확인 등)

유 형	제출서류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생) 재학증명서 ▪ (2학기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취업준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19년 1학기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 공통 제출서류(타 시·군 출신 확인 등)

제출서류	대상자 및 발급방법 등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공사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가 등본상 부모와 세대분리시) 부모 모두,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등본 추가제출 	1통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등본에서 부모 또는 혼인여부(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1통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이혼시에 한해 제출 *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1통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본상 이혼한 부모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 순위별 입주자 자격 요건 확인 구비서류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장애인가구로 신청시

세부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수급자	▪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가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R.I.R)이 30%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 (부모, 신청자 각각 인정 가능하나,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신청자의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신청자 작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일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주민센터

- (추가서류) 장애인(소득 70%/100% 이하자) 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RIR 적용자 및 2~4순위로 신청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p>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공사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가구원 전원이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p>자산 보유사실 확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신청자 작성

8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주택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에 한하여 주택열람 및 호실 추첨이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재계약 자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 거주가능하며,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2회의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시 소득조건과 관련하여 1, 2순위 입주자가 재계약 시 3, 4순위 자격을 유지한 경우 3, 4순위 임대조건 적용하며, 대학생의 경우 휴학 중인 경우에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청년매입주택으로 다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단,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동호 지정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주택 건물별 호수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가 발생 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자 본인만 입실 가능합니다. ▪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입주하셔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임대 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우리공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생활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당사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환 및 공실로의 동호이전 등은 불가합니다. ▪ 공동생활 위해행위(사회적 문란행위, 상습음주 및 흡연, 지인 등의 잦은 방문 등)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조사 요청에 대한 미협조 시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공사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서류에 연락처, 주소 등 오기 또는 변경으로 인한 미 통보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9 접수장소 및 문의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시사무연구동

문의	전화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 780-3595, 3592
약도	
주소 및 대중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침단로 330(영평동, 세미양빌딩) C동 102호 주거복지팀 (우편번호 63309) ▪ 대중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국제대학교 종점 하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주 : 425, 426 - 신제주 : 471, 472, 473 【제주국제대학교 정문 하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 : 182, 281 - 성 산 : 112, 212 - 표 선 : 122, 222 - 남 원 : 132

【첨 부 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물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물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험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첨 부 2】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세대별 규모 및 임대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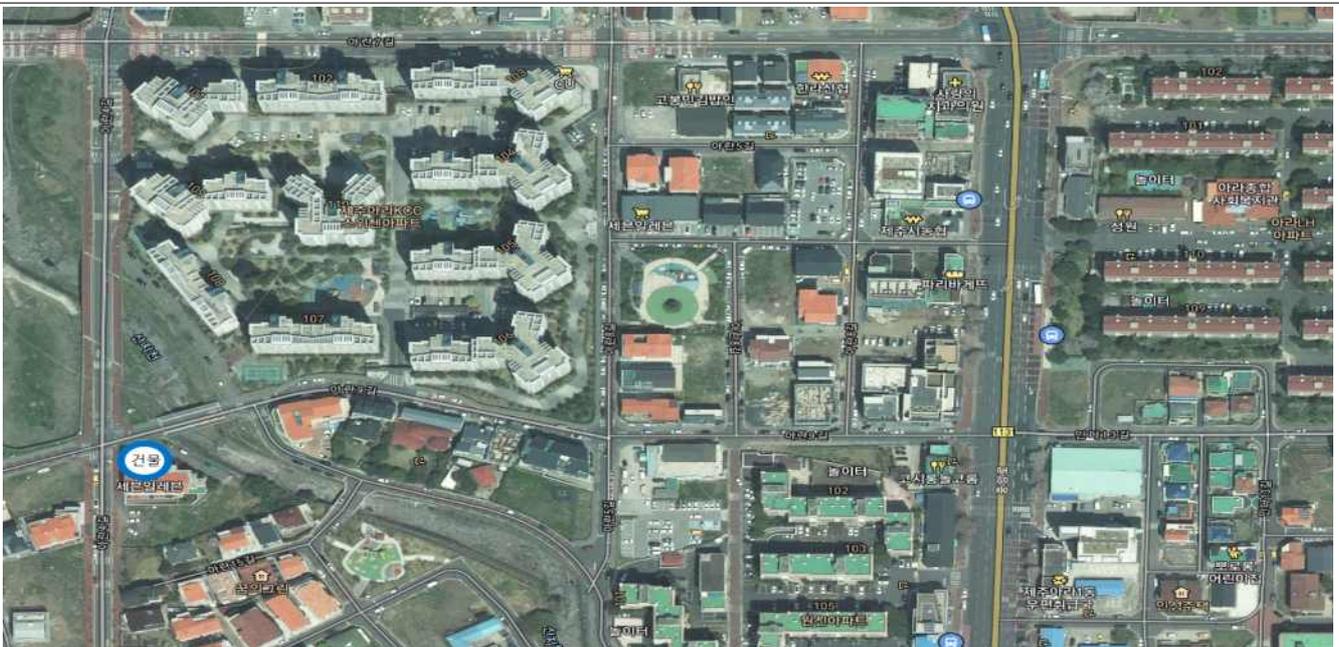
※ 작성된 보증금 및 임대료는 1,2 순위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첨부된 임대조건 자료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개요

주택명 호수	아라디오반 풀하우스			주소 사용승인일	제주시 아란9길 33		
	전용면적(㎡)	공급면적(㎡)	방수		입주가능시기	보증금(원)	임대료(원)
202	31.4575	56.1816	1.5	2012.03.27	즉시	6,840,000	125,020
203	31.4575	56.1816	1.5		즉시	6,840,000	125,020
205	31.4575	56.1816	1.5		즉시	6,840,000	125,020
206	32.2575	57.6103	1.5		2019.06.23.	7,011,000	128,140
208	32.2575	57.6103	1.5		2019.03.20.	7,011,000	128,140
306	32.2575	57.6103	1.5		2020.01.15.	7,011,000	128,140

□ 주택 위치 및 사진

주택 위치



주택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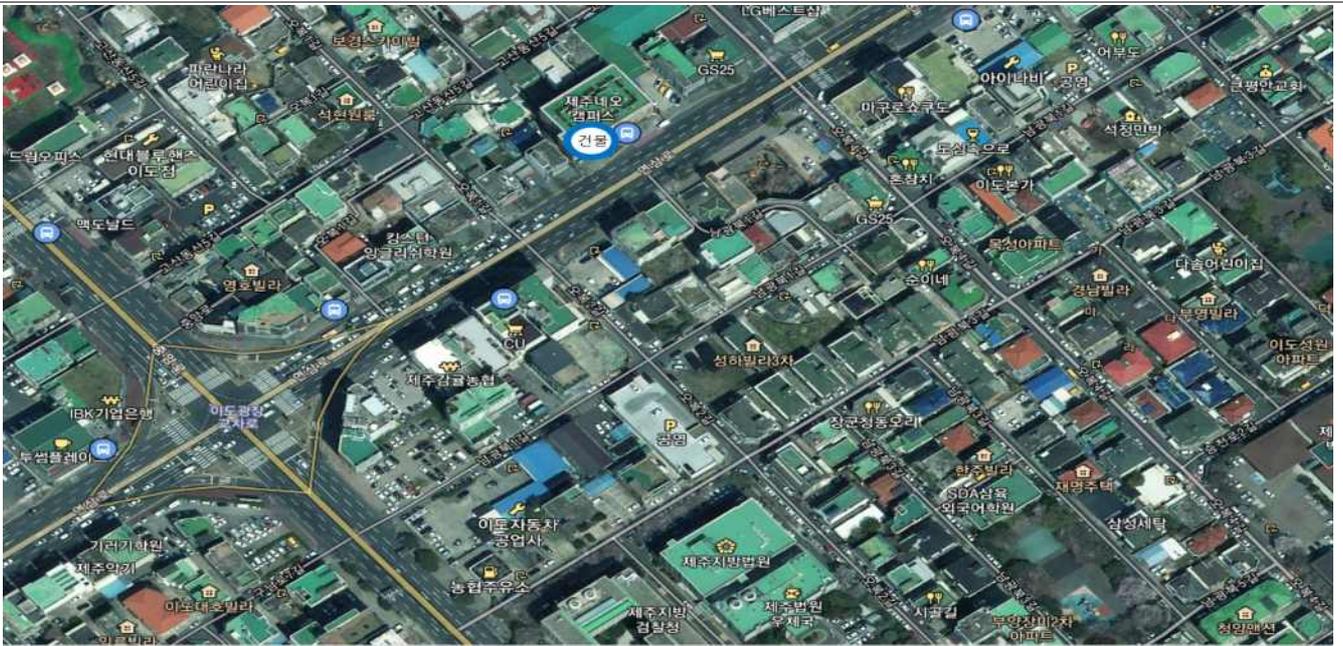


□ 주택 개요

주택명 호수	네오캠퍼스			주소 사용승인일	제주시 연삼로 411		
	전용면적(㎡)	공급면적(㎡)	방수		입주가능시기	보증금(원)	임대료(원)
508	18.924	33.208	1	2004.04.06	즉시	4,527,000	82,740
509	18.924	33.208	1		즉시	4,527,000	82,740
510	18.924	33.208	1		즉시	4,527,000	82,740
609	18.924	33.208	1		즉시	4,527,000	82,740
612	20.881	36.641	1		즉시	4,995,000	91,290
613	21.206	37.210	1		즉시	5,076,000	92,770
617	18.924	33.208	1		즉시	4,527,000	82,740
620	18.924	33.208	1		즉시	4,527,000	82,740

□ 주택 위치 및 사진

주택 위치



주택 사진



□ 주택 개요

주택명 호수	더휴빌			주소 사용승인일	제주시 산천단동3길 8-10		
	전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방수		입주가능시기	보증금(원)	임대료(원)
101	18.960	22.550	1	2014.01.03	즉시	4,392,000	80,270
102	18.940	22.530	1		2020.03.01.	4,392,000	80,270
103	18.940	22.530	1		즉시	4,392,000	80,270
105	18.960	22.550	1		즉시	4,392,000	80,270
201	18.960	22.550	1		즉시	4,392,000	80,270
202	18.940	22.530	1		2019.06.19.	4,392,000	80,270
203	18.940	22.530	1		즉시	4,392,000	80,270
205	18.960	22.550	1		즉시	4,392,000	80,270
301	18.960	22.550	1		즉시	4,392,000	80,270
302	18.940	22.530	1		즉시	4,392,000	80,270
303	18.940	22.530	1		즉시	4,392,000	80,270
305	18.960	22.550	1		즉시	4,392,000	80,270
501	18.960	22.550	1		즉시	4,392,000	80,270
502	18.940	22.530	1		즉시	4,392,000	80,270
503	18.940	22.530	1		즉시	4,392,000	80,270
505	18.960	22.550	1		즉시	4,392,000	80,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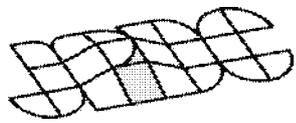
□ 주택 위치 및 사진

주택 위치



주택 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